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77
----------	------

발의연월일 : 2025. 4. 21.

발 의 자 : 민형배 · 김문수 · 주철현
이성윤 · 김동아 · 박지원
이개호 · 소병훈 · 조계원
김현정 · 박균택 · 문정복
손명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K-콘텐츠 산업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개발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항공우주기술(ST) 등 타 분야는 각각 전문기관이 존재하나, 문화기술(CT) 분야만 전문연구기관이 없습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도 포함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18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R&D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문화기술(CT)을 연구·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복합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1조의2 신설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제17조의5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제휴

5. 문화기술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설

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설립등기 후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u><신 설></u> 2. (생 략) ③·④ (생 략) <u>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u>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기술연구원</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한다.

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
발
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
구
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
학연 공동연구·기술제휴
5. 문화기술의 개발·보급과 관
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2(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 디자인, 문
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
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에 관
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한다.

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
발

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
구

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
학연 공동연구·기술제휴

5. 문화기술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